

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

-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
 - 비위면직자의 공사 취업제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및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실시

- 관련 내부 규정
 - 인사규정 제9조 제7호 및 제11호

-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
 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